

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에 제14호부터 제1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4.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

15. 「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」 제13조에 따른 자살예방센터

16. 「건강가정기본법」 제35조의2에 따른 가족센터

제4조제4항에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1. 정신건강복지센터: 청소년의 우울·불안 등 정신건강상 문제에 대한 상담, 치료, 의료기관 연계 등 정신건강서비스 제공

12. 자살예방센터: 자살 위험 청소년 대상 상담, 자살 예방 교육 및 사후관리 실시

13. 가족센터: 위기청소년의 부모 및 가족 대상 상담·교육, 가족기능 강화 지원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 체계 구성 등) ① 법 제9조제1 항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 지원체계(이하 “통합지원체계” 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(이하 “필수연계기관” 이라 한다)를 반드시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한다. 1. ~ 13. (생 략) <신 설>	제4조(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 체계 구성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<신 설>	1. ~ 13. (현행과 같음) 14.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 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에 따른 정신건 강복지센터
<신 설>	15. 「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 화 조성을 위한 법률」 제13 조에 따른 자살예방센터
<신 설>	16. 「건강가정기본법」 제35조 의2에 따른 가족센터
② · ③ (생 략)	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④ 필수연계기관의 협력의무 등 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	④ ----- ----- -----.
1. ~ 10. (생 략)	1. ~ 10.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11. <u>정신건강복지센터: 청소년</u>

	<u>의 우울·불안 등 정신건강상 문제에 대한 상담, 치료, 의료 기관 연계 등 정신건강서비스 제공</u>
<u><신 설></u>	<u>12. 자살예방센터: 자살 위험 청 소년 대상 상담, 자살 예방 교 육 및 사후관리 실시</u>
<u><신 설></u>	<u>13. 가족센터: 위기청소년의 부 모 및 가족 대상 상담·교육, 가족기능 강화 지원</u>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성평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	
연 락 처	(02) 2100 - 6272